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4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3. 0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4. 03. 0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4. 03. 21.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은주)

가. 개정이유

- 작은학교 살리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등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와 유사·중복기능인 위원회 규정 삭제 (안 제5조 ~ 제7조)
- 위원회 규정 삭제에 따른 준용 규정 명시 (안 제9조 및 제10조)
-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완화 (안 제12조)
- 계약해지 및 명의변경에 관한 협의회 심의 기능 조정 (안 제13조 및 제1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검토의견 미반영[복지지원과-2825(2024. 1. 18.)호]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 해당조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제3항 ⇒ 위원은 민관학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해당조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제3항 ⇒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학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검토의견 미반영 ⇒ 상위법에 규정되어 조례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함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124호

가) 예고기간: 2024. 1. 22. ~ 2024. 2. 13.(22일간)

나) 예고결과: 별도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5조~제7조)

◦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음.

- 위원회 규정 삭제에 따른 준용 규정 명시(안 제9조~제10조)

◦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학생모심실무협의회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음.

-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완화(안 제12조)
 -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초등학교 포함 세대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가구원 포함 가구로 확대하고, 거주기간도 초등학교 졸업 자녀가 관내 학교를 진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음.
- 조문 정비
 -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삭제(안 제13조)
 - 거주기간 관련 조항 삭제(안 제14조)
 - “위원회” → “협의회” 로 정비(안 제15조)
 - “입주자격” →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으로 정비(안 제17조)

○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저출산의 영향으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3. 21.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